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2. 12.(수) 09: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석진 부위원장  
허욱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

##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09시 33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 욱 위원님께서도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영상회의 종료 후 본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해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6차 및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8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도록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및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0-09-041)

###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2쪽입니다. 의결 주문입니다. (주)삼라가 신청한 (주)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을 의결한다. <승인 조건>, 방송법 제8조제3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울산방송의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2020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 15조의2에 따라 (주)삼라가 신청한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삼라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자산규모 10조원 초과 방지 등을 위해 (주)삼라를 중심으로 계열사 내 합병을 추진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님을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법률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였

습니다. 4쪽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주)삼라의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입장)

(주)삼라는 2019년 3월에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제출한 약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의 자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다만, SM그룹의 자산 총액이 10조원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하여 방송법상의 소유제한 규제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주)삼라는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울산방송의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통위의 점검이 필요함. 검토 의견입니다. (주)삼라의 (주)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향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방송법 제8조제3항 및 방송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둘째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울산방송의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2020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2월 중에 (주)삼라에 대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먼저 말씀드리면,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를 (주)삼라로 변경 승인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상임위원

- 이 안건은 울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승인하는 단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방송사업의 경영규제에 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방송 최다액출자자인 (주)삼라가 소속한 기업집단이 방송법시행령에서 정한 자산 총액 10조원을 초과할 수 있어서 법 위반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전문가 심사 결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향후에도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초과해 방송법상 소유제한 규제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심사의견을 반영해서 자산 총액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서 제출을 승인조건으로 부가한 것은 적절한 조건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변경승인함으로써 울산방송의 법령 위반 가능성은 일단 해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동일한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방송사업의 대기업 소유지분 및 경영제한 규제에 대해 선제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방송사업 경영규제는 시청자보다 기업이익에 편향될 것을 우려해서 방송을 자본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장치로 고안된 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을 두고 방송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시대에 방송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감당할 만한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정 규모를 정해서 규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에는 자산총액 3조원 이상인 대기업에 방송사업 진출을 금지했지만 2008년 말에 방송의 산업성을 강조하는 당시 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이후 1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08년 당시 규제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규모는 약 9,300억 달러에 1인당 국민 총 소득은 21,5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규모는 1조 6,000억 달러이고 1인당 국민 총 소득은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미디어 산업의 융복합화와 글로벌 경쟁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방송법상의 소유 및 경영규제가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전규제는 완화 내지 폐지하고, 사후 행위 규제를 통해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에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존경하는 허 옥 위원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해야 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자산총액 10조원 기준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약약서가 승인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제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위반하면 당연히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약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께서 조건으로 부가했으니까 그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법상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약약서를 받아야 하는지,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저는 그런 뜻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으로 의견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간단하게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울산방송에 대한 허가조건이 울산방송의 재정 안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3월 31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방송사를 인수해서 사업을 할 경우, 특히 재정상태가 열악했던 방송사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지원할 것이냐는 것은 대충 윤곽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방송이 30억원 정도 경영적자를 보고 있어서 이런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20-09-042)**

○ 한상혁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나>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지상파방송 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안건 2쪽입니다. 의결주문은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신청한 (주)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을 의결한다.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에 관련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재발방지 협약서 및 관련 대책을 2020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및 지역문화·방송발전 등을 위한 이행계획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주)귀뚜라미홀딩스가 신청한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귀뚜라미그룹 계열사 내 분할 합병으로 인해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가 (주)나노켄에서 (주)귀뚜라미홀딩스로 변경 후,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11월 21일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가 나노켄에서 (주)귀뚜라미홀딩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주)귀뚜라미홀딩스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에서는 12월 24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김창룡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방송·미디어, 경제·경영·회계 등 7인의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주)귀뚜라미홀딩스의 (주)티비씨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귀뚜라미홀딩스는 그룹 내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사를 신설하였으며, 지상파 방송사로서의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인함. 다만, 방통위의 사전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최다액출자자의 의지를 협약 받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귀뚜라미홀딩스는 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지역 문화 발전,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 환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통위는 지역문화발전 등에 관한 계획을 제출 받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주)귀뚜라미홀딩스는 대구·경북지역의 장학사업 및 문화, 언론 지원 사업을 위해 (재)티비씨 문화재단에 1억원을 기부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 의견입니다. (주)귀뚜라미홀딩스의 (주)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관련하여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 등 방송법 위반 재발 방지, 지역문화·방송발전 및 사회 환원 확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승인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 관련,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이사회에 관련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고, 재발방지 협약서 및 관련 대책을 2020년 3월 31일까지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둘째 방송의 공적책임 구현 및 지역문화·방송발전 등을 위한 이행계획을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오늘 변경승인을 의결하여 주시면 2월 중에 (주)귀뚜라미홀딩스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김창룡 상임위원

- 제가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말씀드리면,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를 (주)귀뚜라미홀딩스로 변경 승인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이 나왔고, 지금 보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티비씨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두 번 심사를 하게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다는 점에서, 또 표철수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질타 하셔서 티비씨로부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귀뚜라미홀딩스가 티비씨 문화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지상파방송정책과장에서 끝까지 체크해서 최종 사회환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티비씨에만 가는지, 아니면 정말 사회에 제대로 환원되는지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이번 티비씨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티비씨의 방송법 위반사항이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사후에 발견됨에 따라 이를 행정절차적으로 치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티비씨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 방송법 등 현행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제재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장대호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이 방송사업자를 주 규제대상으로 함에 따라서 최다액출자자를 구체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재방안은 찾기가 곤란했었습니다.

○ 허 욱 상임위원

-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무력화한 티비씨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함에도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없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티비씨가 승인조건을 제대로 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김창룡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주)에스비에스엠앤씨 (2020-09-043)**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방송광고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20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에스비에스엠앤씨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8월 22일 재허가를 받은 (주)에스비에스엠앤씨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이 '20년 8월 21일 만료함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주요내용입니다. 심사절차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허가 대상에 통보하고, 3개월 전까지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허가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허가심사기간은 허가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리고 30일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사항입니다. 심사위원은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분야 등 관련 연구기관, 학회,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총 10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장은 상임위원이나 외부전문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위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허가 심사내용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랩 재허가 신청법인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평가하고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법률요건을 심사하게 되고, 미디어랩 법 제12조에 따른 신청법인의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여부, 그리고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에 대한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심사항목 및 배점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세부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 결과,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그리고 총점이 70점 이상이면 ‘재허가’를 의결하고, 총점이 70점 미만 이거나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60%에 미달한 경우에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허가 조건 부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허가 유효기간 만료를 통보하게 되고, 재허가신청서 접수는 올해 5월 18일부터 21일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방통위 의결은 7월 중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증 교부는 8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상임위원**

- 보고한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큰 이견이 없으며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다만, 에스비에스엠앤씨의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깊이 살펴봐야 할 사항 3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2015년 재허가 조건 이행결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에스비에스엠앤씨는 2012년에 최초 허가를 받은 뒤에 2015년에 5년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재허가 심사 때 우리 위원회는 SBS네트워크 가맹사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OBS가 방송광고판매 과정에서 SBS에 비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재허가조건을 부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비에스엠앤씨와 네트워크 지역 지상파 방송사업자 간에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9개 지역민방과 체결한 네트워크 합의서가 당초에는 2017년 2월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갱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와 지역민방 간 지역별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전파료 배분 기준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쟁점과 경과사항 그리고 합의 노력 수준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5년 재허가 심사 때 우리 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한 OBS의 지원 방식과 규모가 이번 심사 과정에서는 시장 환경 변화와 SBS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생의 관점에서 OBS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는 심사사항과 관련해서입니다. 지상파방송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이행실적 및 계획의 적절성 심사 사항은 2015년에 약속한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은 확실히 하되, 단체 지원 등의 지원사업 계획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하는 등의 조치로 미디어렐사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셋째는 이번 심사에서 SBS 최대액출자자 변경이 미칠 영향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SBS는 에스비에스 엠앤씨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태영건설이 법인을 분할해서 티와이홀딩스 신설을 추진 중입니다. SBS 모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 위에 모기업격인 티와이홀딩스가 신설될 경우에 에스비에스엠앤씨는 증손회사가 됩니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인 SBS는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합니다. 물론 2년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지난달 22일 분할기업 공시를 낸 만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추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부위원장**

- 허 옥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의견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3가지 방안에 착안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심사항목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 과락 점수입니다. 그리고 총점이 7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적격 판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나 종편 사업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보면 과락 점수가 40점입니까?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50점입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이것이 차이가 나는데 물론 성격상 미디어렐은 다른 성격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혹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나온 말씀들인데, 계량평가가 3점에 불과하고 비계량평가가 97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안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고시에 배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못 바꾸는 것입니까?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오늘 안건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무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

- 미디어랩 전체 100점에 계량 부분의 비중이 재정 건전성 이 부분 3점으로 굉장히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상파방송의 심사항목 그리고 종편의 심사사항 또 보도채널의 심사항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상파·종편이 전체 만점이 1,050점이고, 그중 재정 건전성 이 부분이 30점으로 1,050점의 30점과 100점의 3점 부분은 비율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비중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평가에서도 비슷한 배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면 다음번 미디어랩 재허가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석진 부위원장**

- 사무처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이 미디어랩에 대한 재허가 심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SBS가 최근에도 계속 흡쇼핑 연계편성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연계편성을 함에 있어서 협찬이라는 형태로 방송사에 돈이 들어갈 텐데, 이것이 SBS 자체에 직접적인 영업에 의한 흡쇼핑 연계 편성인지 혹시 미디어랩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만약에 미디어랩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전체적으로 원안에 동의하시고, 몇 차례 지적된 구체적인 심사 규정상의 문제점들이나 미비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허 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티와이홀딩스 신설로 인해 생기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시장조사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유입니다.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등을 구체화하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자료제출 요청 대상은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서류, 전산 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청 방법입니다.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번번호, 제출 자료, 제출기한과 장소, 제출방식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출 기한 연장 사유 및 기한을 명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거부·방해, 기피, 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 허 욱 상임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금지행위 관련된 자료제출 규정을 신설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료제출의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내용입니다. 보고했듯이 방송사와 미디어랩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금지행위 조사 때 요청할 자료 대상에 경영상황 관련된 자료, 전산자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의 사후 조사에 필요한 조사수단을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규제자의 의견도 타당한 내용이 있으면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및 경영상황 관련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등 좀 더 구체적으로 제출할 자료의 범위나 내용들에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타당성 있게 정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전에 이해관계자들 의견청취는 된 것입니까?

○ 임필교 방송시장조사과장

- 의견청취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법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05분 폐회 】